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7. .
제출자 : 구미시 장

1. 제안이유

가. 민간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다각화된 직무를 개발함으로써,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위탁하고자 함.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 3)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4)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다. 위탁사무

- 1)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관리
- 2) 장애인일자리 사업 직무 개발 및 참여자 배치, 사업운영 전반

라.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간 * 2027. 1. ~ 2029. 12.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940,110천원 * 2027년 예산 기준

(단위: 천원)

계	인건비	퇴직금	운영비	비 고
940,110	776,520	74,310	89,28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6년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3. 부서의견

-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민간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당 사업은 매년 선정인원 대비 약 2배의 신청자가 지원하는 등 참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미선발 대기자 적체 해소 및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체계 확보가 필요함.
- 민간기관의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장애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직무를 개발함으로써,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 고용 시장으로의 전이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3)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4)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다.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해당없음(신규 위탁)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
2. 비영리민간단체
3. 특수교육관련기관

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과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위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
2.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시 사업운영에 따른 참여자 인건비·운영비 지원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소요 발생
-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재정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6년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구분					
세출	○ 인건비	776,520	1,066,560	1,372,800	3,215,880
	○ 퇴직금	74,310	102,000	131,350	307,660
	○ 운영비	89,280	122,400	157,800	369,480
	소계(b)	940,110	1,290,960	1,661,950	3,893,02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구분					
국 비		470,055	645,480	830,975	1,946,510
도 비		141,016	193,644	249,293	583,953
시 비		329,039	451,836	581,682	1,362,557
민 간		-	-	-	-
기 타		-	-	-	-
합 계		940,110	1,290,960	1,661,950	3,893,020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보건복지부 본예산 확정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매년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유지현(☎480-5168)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 분	금액(천원)	산 출 근 거
	합 계	3,893,020	
2027	소 계	940,110	
	인 건 비	776,520	· 2,157천원 × 30명 × 12월 = 776,520천원
	퇴 직 금	74,310	· 2,477천원 × 30명 × 1월 = 74,310천원
	운 영 비	89,280	· 248천원 × 30명 × 12월 = 89,280천원
2028	소 계	1,290,960	
	인 건 비	1,066,560	· 2,222천원 × 40명 × 12월 = 1,066,560천원
	퇴 직 금	102,000	· 2,550천원 × 40명 × 1월 = 102,000천원
	운 영 비	122,400	· 255천원 × 40명 × 12월 = 122,400천원
2029	소 계	1,661,950	
	인 건 비	1,372,800	· 2,288천원 × 50명 × 12월 = 1,372,800천원
	퇴 직 금	131,350	· 2,627천원 × 50명 × 1월 = 131,350천원
	운 영 비	157,800	· 263천원 × 50명 × 12월 = 157,800천원

소 관 부 서		장애인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박 연 길
	팀 장	신 미 현
	담 당 자	유 지 현 (480-5168)